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12.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위원회 (2005. 12.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
 -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 구청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4조)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함.
 -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폐지
 -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와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일부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을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안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였고, 안 제6항 내지 안 제8항에서는 포상휴가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예정일 전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 등은 폐지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는 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본인 결혼(7일), 배우자의 출산(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에 한해서만 특별휴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앞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5. 7. 15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특별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규정한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한다고는 하나 토요일 휴무 등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부득이한 경조사인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특별휴가 일수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 되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특별휴가는 일수에 산입됨.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 2일은 짧은 것 같은데?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필요시 연가를 사용해야 함.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1/2의 범위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법으로 정해져 있음.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생리 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행정부의 표준안으로 전국이 통일 된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5. 1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 (1)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
- (2)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 구청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4조)

- (1)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함
- (2)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폐지
- (3)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안 별표3)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4호, 2005.6.30) 제2조,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05.8.20~ 9.9, 20일간)결과 특이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7항,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p><삭 제></p>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삭 제></p>
<p>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별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삭 제></p>
<p>⑨ (생략)</p>	<p>⑨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 ----- ----- ----- -----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7</td> </tr> <tr> <td>자녀</td> <td>1</td> </tr> <tr> <td></td>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1</td> </tr> <tr> <td rowspan="2">희갑</td> <td>본인 및 배우자</td> <td>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1</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3</td> </tr> <tr> <td rowspan="7">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7</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조부모, 의중조부모, 의조부모</td> <td>5</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2</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조부모, 의중조부모, 의조부모</td> <td>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희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조부모, 의중조부모, 의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조부모, 의중조부모, 의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본인</td> <td>7</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3</td> </tr> <tr> <td rowspan="3">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2</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희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조부모, 의중조부모, 의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조부모, 의중조부모, 의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